##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9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문대림・이건태・이병진

이기헌 • 조인철 • 박해철

강선우 • 황명선 • 윤종군

위성곤 • 윤준병 • 김한규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·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.

그런데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「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등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, 각종 운송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임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대조항이 없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 는 한편,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 외곽 먼섬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수급과 안보의 위험성과 불안 정성이 높은 섬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 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
- 2. 「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국토 외곽 먼섬
- 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

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생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
	너지의 수급과 안보의 위험성
	과 불안정성이 높은 섬지역의
	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
	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
	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<u>②</u>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36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	제36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
정 등) ①・② (생 략)	정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	3
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	
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	
지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	
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	
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	
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산업통상</u>
	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
	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
	<u>려하여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
	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

	별법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
	<u>도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「울릉도・흑산도 등 국토외
	곽 먼섬 지원 특별법」에 따
	른 국토외곽 먼섬
<u>&lt;신 설&gt;</u>	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
	<u>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</u>
	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
	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
	<u>상인 지역</u>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